

부산광역시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1998. 9. 17 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8. 9. 17

다. 상 정 일 자 : 제71회 사하구의회(임사회)

제3차 총무사회위원회(98,10,31) 상정·수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이태경 기획감사실장)

가. 제안이유

98년1월1일자로 행정절차법제정과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에 따라 본법령에서 위임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입법예고 대상은 지방세,보건,환경,도시계획,건축,교통, 상하수도,정보화관련 제도 등의 사무로 함(안제3조)
- 예고방법은 우리구공보인 “내고장사하”에 게재토록하고 필요시는 일간신문, 방송,간행물로 하도록 함(안제5조)
- 예고후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는 경우 최대한 반영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(안제7조)
-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함(안제8조)
- 주민은 자치법규의 정비,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제출가능(안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구민의 권리 의무와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관련이 되는 지방세, 보건환경, 도시 계획, 건축분야등에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 취지되 그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공청회와 의견제출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의 조례제정 사항으로 그 세부내용을 보면 예고대상사무,예고방법,예고기간을 규정함과 함께 의견제출과 공청회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와 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 제출등을 구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등 근본적으로 입법의 실효성을 높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안임으로 조문구성에 별다른 흠결사항이 없는한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8. 10. 31 ----- 이석래 위원

나. 수정이유 : 시조례와 일치되게 예고방법중에 컴퓨터 통신 방법을 추가

다. 수정주요골자 : 수장안 대비표 참조

7. 심사결과 : 수정의결

첨부 : 수정안 대비표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5조(예고방법) ① 제4조의 입법예고 문은 사하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인 “내고장 사하”에 게재하되, 필요한 경우 이외에 신문, 방송,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예고할 수 있다</p>	<p>제5조(예고방법)①----- ----- ----- 이외에 신문, 방송, 컴퓨터 통신 등 이해관계----- ----- -----</p>